

2022년도 제2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2022. 1. 12.(수요일), 10:30
-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석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3분과위원회 위원 4명 참석
 - 심의위원: 최승수(분과위원장), 강태욱, 김경숙, 노정동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

2.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강나래 전문위원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제2호: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3.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6,448건(안건번호 제2022-880호 ~2740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제2022-880호~893호(순번 1번~14번)는 불법복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암호화하여 게시한 사안으로, 심의대상 게시물들은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조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로 시정권고의 대상성이 인정되는 점, 현재 합법 시장에서 제공 중인 저작물을 전송하는 경로를 제공 중인 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점 등이 인정되나, 현재 저작권 침해 상태가 모두 해소되었으므로 경고의 시정권고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2-894호(순번 15번)는 불법복제물로 연결되는 직접 링크를 제공하고 있는 사안으로, 저작권 침해 방조행위에 해당되어 '저작권 침해 정보'로 인정되는 점, 합법 시장에 미칠 영향이 상당한 점 등이 인정되어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2-895호~929호(순번 16번~50번)는 웹하드 사이트에서 다수의 불법복제물을 게시한 사안으로,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모두 시정권고의 필요성 또는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2-931호~955호(순번 51번~76번)는 블로그 등에서 다수의 불법복제물을 게시한 사안으로,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시정권고의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2-956호(순번 77번)는 블로그에서 영상 없이 우리말 자막파일만 제공한 사안임. 심의대상 자막파일이 불법복제물의 이용을 전제로 작성된 점, 게시자가 행위의 불법성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계속적으로 저작권 침해 행위를 한 점, 해당 블로그 내 자막 전송이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정이용으로 보기 어렵고 심의위원회의 합치된 기준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가결함.

그 외에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심의안건 게시물 6,235건은 삭제 또는 전송 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 제2호: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 주요내용: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미 접속차단의 시정요구를 한 해외 저작권 침해 사이트 5개의 대체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URL 정보 총 551개의 URL 정보에 관한 '구글' 검색결과 제한 협조 요청 여부(안건번호 제2022-665호~1215호)

- 회의결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접속차단 조치한 해외 저작권 침해 사이트의 대체사이트 5개에 접속할 수 있는 551개의 URL 정보에 관해 검색결과 제한 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가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최승수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 제2회 저작권보호심의 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안전상정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강나래 전문위원: 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 목록을 직접 확인해 주시고,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에 따른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해당 없음.

- 최승수 분과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람.

- 강나래 전문위원: 금일 심의안건은 41개 온라인서비스의 이용자들이 게시한 6,448건의 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 심의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음.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1번~14번은 3명의 민원인이 실명으로 신고한 건으로, 커뮤니티 사이트 이용자가 다수의 영상저작물을 스트리밍 또는 다운로드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 △

△ △△△△ 링크를 암호 형태로 게시한 사안임. 총 14개 게시물임. (순번 1번, 11번, 14번 채증 자료를 순차적으로 제시하면서) 각 심의 대상 게시물은 예고편의 기능을 하는 1~2분 분량의 영상물과, 암호화된 링크, 게시자가 과거에 동일한 형태로 작성한 커뮤니티 사이트 내 게시물의 링크로 구성되어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에서 제공 중인 암호를 '△△△△△△△△△△△△△' 웹사이트에 입력하면 '△△△△△△△' 항목에 △△ △△△△ 주소가 현출됨. 해당 주소로 접속하면 불법 복제된 영상을 직접 다운로드할 수 있음. 이와 같은 형태의 불법 복제물 전송은 해당 게시판에서 통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 △', '△△ △△△' 등의 키워드 검색을 통해 이용 방법까지 공유되고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 및 게시자의 기타 게시물의 내용으로 추측할 때, 게시자는 △△ △△△△에 불법복제물을 직접 업로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검색결과의 '△△△ △△△'를 통하여 삭제되기 전 상태의 심의대상 게시물에 접속하여 보여주면서) 2022. 1. 12. 심의일 기준, 순번 1번~2번의 경우 게시물에 삭제되었으며, 순번 3번~14번의 경우 게시물은 현존하나 링크 부분이 삭제되었음.

심의대상 게시물이 불법복제물을 직접 전송 중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저작권 침해 정보'로 보아 시정권고의 대상인 '불법복제물등'으로 판단할 수 있을지 문제됨.

저작권법 및 판례는 '저작권 침해 정보'에 대하여 별도의 정의를 하고 있지 않음. 이에 우리 심의위원회는 게시자에게 불법행위 방조 책임이 성립할 수 있는 경우에 준하여 '저작권 침해 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

불법복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설정한 게시물에 대하여, 우리 대법

원은 “링크 행위자가 정범이 공중송신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그러한 침해 게시물 등에 연결되는 링크를 인터넷 사이트에 영리적·계속적으로 게시하는 등으로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침해 게시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정도의 링크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범이 성립할 수 있다고 하여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방조를 인정한 바 있음.

게시자는 오로지 불법복제물을 전송할 목적으로 암호화된 링크를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음. 기존 링크 사안과는 달리 암호를 해독하는 추가적인 단계가 요구되나, 암호화된 링크를 제공하는 자와 해당 링크를 통하여 연결되는 불법복제물의 게시자가 동일한 점을 고려할 때 불법복제물 전송에 따른 신고를 회피할 목적으로 암호 형태로 링크를 게시한 것에 불과하고, 모든 절차는 불법복제물 전송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따라서 특별히 기존의 링크 사안과 달리 불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심의대상 게시물의 암호화된 링크 제공 행위는 저작권 침해의 방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심의대상 게시물은 ‘저작권 침해 정보’에 해당하므로 시정을 권고하는 것이 타당함.

한편 심의위원회는 원천게시물이 국내 서버에 저장된 경우에는 원천 게시물에 대하여, 해외 서버에 저장된 경우에는 링크게시물에 대하여 시정권고하고 있음. 사안의 경우 원천게시물이 해외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바, 링크를 제공 중인 심의대상 게시물을 시정권고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동일한 형태의 사안에 대하여, 2022. 1. 4. 개최 제2022-1회 2분과위원회에서는, 심의대상 게시물은 ‘저작권 침해 정보’로 시정권고의 대상성이 인정되는 점,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점 등을 고

려하여 가결하였음.

링크 부분만을 삭제한 게시물의 경우에도 저작권을 침해하는 부분이 삭제되어 저작권 침해 상태가 해소되었으므로 게시물 자체가 삭제된 순번 1, 2번과 동일하게 보아 경고의 시정만을 권고하여도 시정권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종합하면, 게시자의 링크 행위는 저작권 침해를 방조하는 행위로서, 심의대상 게시물 중 암호화된 링크는 '저작권 침해 정보'에 해당하여 시정권고의 대상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저작권 침해 상태가 모두 해소되었으므로 경고의 시정권고 가결 의견으로 검토하였음.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D 위원: 심의일 기준 웹사이트에서는 심의대상 게시물이 삭제되거나 암호화된 링크가 삭제되었지만, △△ 검색결과를 통하여 심의대상 게시물에 접속할 수 있다는 의미인지?
- 강나래 전문위원: (기 시정 조치된 게시물에 직접 접속하여 보여주면서)해당 커뮤니티 사이트 내에서는 해당 게시물이 삭제되었지만, (△△에서 검색된 결과를 보여주면서)누군가가 해당 웹페이지를 이용함에 따라 △△ 내 '캐시'가 생성되었고, 해당 캐시의 기록이 △△ 검색결과로 도출되는 것임. 이 경우 '△△△ △△△'를 클릭하면 삭제되기 전 페이지를 확인할 수 있음. 결론적으로, 심의대상 URL은 삭제된 것이 맞지만, 삭제 여부와 무관하게 △△ 검색결과를 통하여

해당 웹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는 상태임.

- D 위원: 해당 '△△△ △△△'의 내용은 누가 게시한 것인지?
- 강나래 전문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의 게시자와 동일함. 심의대상 게시물과 별도로 게시된 것이 아니라, 접속 기록으로 인해 삭제 이전의 상태로 캐시 형태의 웹페이지가 잔존하게 된 것임. 심의대상 게시물의 URL 자체는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음.
- D 위원: △△ △△△△에 불법복제물이 현존하고 있고, △△ △△△△로 가는 경로 정보가 웹사이트에서는 없어졌지만, 과거 게시자가 올린 캐시 정보가 남아 있어 불법복제물을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됨. 게시자가 △△ △△△△ 링크를 암호화하여 게시한 이유가 있는지?
- 강나래 전문위원: '△△△△△△△△△△△△△△△△△△'이 포함된 URL로 게시하면 불법복제물 모니터링에 잡힐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이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 B 위원: 암호화된 링크는 '저작권 침해 정보'에 해당하여 시정권고의 대상성이 인정되나, 현재는 저작권 침해 상태가 모두 해소되어 경고의 시정권고 가결 의견임.
- A, C, D 위원: 동의함.
- 최승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1번~14번은 경고의 시정권고

가결함.

- 강나래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15번은 실명의 민원인이 신고한 건임. 커뮤니티 사이트 이용자가 미국 애니메이션 방송물을 스트리밍 또는 다운로드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다수의 링크를 제공한 사안임. 총 1개 게시물임.

(순번 15번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하여 보여주면서)심의대상 게시물은 다수의 미국 애니메이션 방송물로 연결되는 수 개의 링크를 제공 중이며, 해당 링크는 △△△ △△△, △△△△△, △△△△△△, △△ △△△△ 등 다양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음. 이미 삭제된 링크 및 관리자사가 제공 중인 공식 웹사이트의 링크도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대부분이 불법복제물로 연결되는 링크로 확인됨.

(심의대상 게시물에 게시된 링크를 클릭하여 보여주면서)해당 저작물의 총 20화를 스트리밍 형식으로 제공하고 있음. (해당 저작물의 4화를 재생하여 보여주면서)한 화 전체 분량인 약 22분을 우리말 자막과 함께 제공하고 있음.

해당 방송물들은 디즈니 플러스, 넷플릭스 등 OTT 서비스를 통하여 합법 시장에서 이용 가능함.

앞선 순번에서 살핀 바와 같이, 불법복제물의 링크만을 제공 중인 경우 우리 심의위원회는 저작권 침해의 방조가 성립할 수 있는 경우에 준하여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 대상성을 인정하고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은 오로지 불법복제물의 이용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실제로 다수의 불법복제물이 해당 게시물을 통하여 공중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노출되고 있음. 따라서 심의대상 게시물의 링크행위를 저작권 침해 방조행위로 보아 심의대상 게시물의 시정권고 대상성을 인정하기 충분하다고 할 것임.

시정권고의 대상과 관련하여, 일부 링크의 경우 불법복제물이 국내 서버에 업로드된 사실이 인정되나, △△ △△△△ 등 해외 서버에 업로드된 불법복제물로 연결되는 링크가 다수 포함되어 있는 점, 민원인이 심의대상 게시물을 특정하여 신고한 점, 다수의 불법복제물에 대한 접근을 막기 위하여서는 심의대상 게시물을 신속하게 삭제 또는 전송 중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각 개별 원천게시물이 아닌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할 필요성이 있음. 따라서 심의대상 게시물은 불법복제물로 연결되는 다수의 링크를 제공 중인 바,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 대상성을 충족하는 점,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타당하여 가결 의견으로 검토하였음.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D 위원: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에 이견 없으며, 심의대상의 링크는 '저작권 침해 정보'에 해당하여 시정권고 하는 것이 타당함.
- B, C, A 위원: 동의함.
- 최승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15번은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을 가결함.

- 강나래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16번~50번은 8명의 민원인이 실명으로 신고한 건임. 웹하드 사이트에서 다수의 불법복제물을 각각 제공 중인 사안임. 총 45개 게시물임. (순번 22번 채증 자료를 제시하면서)해당 저작물의 1화부터 326화까지 전체 회차를 10 포인트에 판매하고 있으며, 네이버 시리즈에서 유 한 화당 100원에 소장 가능함.

각 심의대상 게시물은 합법 시장에서 제공 중인 저작물을 불법으로 복제하여 영리 목적으로 이용 중인 점,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우려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타당하여 가결 의견으로 검토하였음.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D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은 합법 시장에서 제공 중인 저작물을 무단으로 전송 중인 점 등을 고려하여 시정권고 필요성이 인정되어 가결 의견임.

- B, C, A 위원: 동의함.

- 최승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16번~50번은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을 가결함.

- 강나래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51번~76번은 5명의 민원인이 실명으로, 1명의 민원인이 익명으로 신고한 건임. 블로그 등 웹사이트에서 다수의 불법복제물 등을 각각 제공 중인 사안임. 총 152개 게시물임.
(순번 61번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하여 보여주면서)해당 저작물의 16화 전체 분량인 약 23분을 스트리밍 형식으로 제공하고 있음. 각 심의대상 게시물의 불법복제물 복제·전송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시정권고 가결 의견으로 검토하였음.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시정권고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가결함.
- 최승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51번~76번은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을 가결함.
- 강나래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77번은 실명의 민원인이 신고한 건임. 블로그 이용자가 일본 애니메이션 방송물의 자막파일(smi)을 영상 없이 게시한 사안임. 총 1개 게시물임.
해당 저작물은 △△ △△△에서 △△△△. △. △△.부터 방영되어 △△△△. △. △△.. 종영 예정으로, 우리나라에서는 △△△ 등 애니메이션 전문 채널에서 △△△△. △△. △△.부터 현재까지 더빙판으

에 따라 판단할 때, 게시자는 행위의 불법성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한 회차 전체 분량의 자막파일 다수를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으며, 불법복제물과 함께 이용할 것을 전제로 제작한 자막을 제공하고 있음.

합법 시장에서 우리말 자막을 이용할 수 없는 점은 인정되나, 심의 대상 자막파일은 불법복제물과 결합하여 이용될 것이 명백하고, 해당 저작물은 최신 저작물로 공표 초기에 불법 복제 및 전송이 이루어지는 것은 잠재적인 시장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칠 것이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현재 합법 시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시장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소극적 요소에 대하여, 심의대상 자막파일은 게시자가 직접 제작한 것으로 보이고, 위 저작물의 대부분은 합법 시장에서 우리말 자막과 함께 이용할 수 없는 바, 게시자로서는 마니아층의 원활한 감상을 돕고자 하는 목적으로 작성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다만 위 저작물들은 모두 최신 저작물로서 저작권자가 장기간 방치한 상황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시정권고 제도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보호하여야 할 대상인 것으로 파악됨.

한편, 우리 심의위원회에서는 '영리 목적이 없는 마니아층의 취미 공유로서의 자막 전송'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그와 같은 점을 시정권고의 소극적 요소로 적극 검토하고 있음. 다만, 이 경우에도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시정권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모은 바 있음.

나아가 2021. 4. 14. 개최 제2021-78회 3분과위원회에서는 국내 정식 수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일본 애니메이션의 자막을 영리 목적 없이 제작하여 공유한 경우 부결하였음. 해당 사안의 경우 단 3개의 자막

파일만을 전송 중이었던 점 등을 소극적 요소로 검토하였음.

그러나 심의대상 게시물의 경우 심의대상 블로그 내에서 다양한 저작물의 자막파일이 대규모로 전송되고 있는 점, 게시자는 해당 행위의 불법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저작권 침해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비공개로 전환되었으나 공지사항을 통해 서로이웃의 경우 접근 가능함을 안내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기존의 부결 사안과는 다르게 불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임.

종합하면, 심의대상 게시물은 공정이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심의위원회의 합치된 기준에 따라 판단했을 때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자막에 대한 기존의 부결 사안과는 다르게 불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시정을 권고하는 것이 타당하여 가결 의견으로 검토하였음.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B 위원: 합법 시장에서 우리말 자막이 포함되어 상영 중인 사실은 전혀 없는지?
- 강나래 전문위원: 우리나라에서는 더빙판만 수입하여 방영 중이고, 기타 우리말 자막이 포함된 일어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
- D 위원: 그렇다면 잠재적 시장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임.

- B 위원: 우리나라에 언제 수입 되었는지?
- 강나래 전문위원: 우리나라에서는 애니메이션 전문 채널에서 2021. 10.부터 현재까지 방영 중임.
- D 위원: 해당 블로그 내 영리 목적이 있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마니아층의 취미 공유로서의 자막을 전송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그러나 단순히 ‘영리 목적이 없는 마니아층의 취미 공유’ 라는 이유만으로 부결로 볼 수는 없고, 이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의 수준 등 기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정권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할 것임. 사안의 경우 지속적으로 불법복제물의 전송이 이루어져 현 시점에서는 저작권 침해의 정도가 상당한 것으로 확인되고, 게시자 역시 불법행위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음. 시정권고 가결 의견임.
- C 위원: 해당 블로그에서 다량의 자막 파일을 전송하고 있는 점, 불법복제물의 이용을 전제로 작성된 자막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시정권고 하는 것이 타당함.
- B 위원: 해당 블로그 내에서 전송 중이 자막파일이 대규모이므로 공정이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심의위원회의 합치된 기준에 따라 판단했을 때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자막에 대해 기존의 부결 사안과 다르게 볼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시정을 권고 하는 것이 타당함.

- A 위원: 심의대상 자막파일이 불법복제물의 이용을 전제로 작성된 점, 공정이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가결 의견임.
- 최승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77번은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을 가결함.
- 강나래 전문위원: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순번 78번~1861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건임. 총 게시물 수는 6,235개임. 심의대상 게시물 모두 불법 복제한 영화, 방송, 음악, 게임, 만화, SW, 출판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심의안건 목록을 제시하면서)일부 안건을 별도로 설명하겠음. 나머지 안건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PC로 접속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람.
(영화 '매트릭스: 리저렉션'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988번은 모바일 웹하드에서 영화 '매트릭스: 리저렉션'을 340 캐시에 판매 중인 사안임. 영화 전체 분량인 약 147분을 스트리밍 형식으로 제공하고 있음. 2021. 12. 21.에 개봉한 미국 액션 영화이며, 현재 극장에서 상영 중임.
(음악 'Counting Stars'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1555번은 웹하드 사이트에서 음악 'Counting Stars'를 50 포인트에 판매 중인 사안임. 1월 1일자 음원 순위 상위 102곡을 'January.01 chart 102'라는 이름의 압축 파일로 묶어 제공 중임. 그 중 하나인 해당 저작물은 2021. 12. 12.에 발매한 최신 가요로써, 멜론, 네이버 바이브

(VIBE) 등 음원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멤버십 유료 가입 후 무제한으로 듣기 가능함.

(SW '한컴오피스 2022'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1825번은 웹하드 사이트에서 SW '한컴오피스 2022'를 120 포인트에 판매 중인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에서 '교육기관용' 버전을 제공하고 있으며, 자동인증 완료된 것으로 보아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한 프로그램을 제공 중일 가능성이 매우 큼. 해당 저작물은 권리자 홈페이지에서 무료 체험용 프로그램을 제공 중이며, 영구사용 SW 판매가 244,860원임.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순번 78번~1861번은 모두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단순 불법복제물이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사안으로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최승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78번~1861번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안건번호 제2022-880호~893호(순번 1번~14번)는 경고의 시정권고 가결하고, 안건번호 제2022-894호~2740호(순번 15번~1861번)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되, 이

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 제2호: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제2호 안건에 관한 회의록은 18쪽부터 24쪽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공개로 결정함.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2-665호~1215호(순번 1번~551번)의 구글 검색 결과 제한을 가결함”

3. 폐회 선언

○ 최승수 분과위원장이 제2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2년 제2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2. 2. 10.

분과위원장 최승수

위원 강태욱

위원 김경숙

위원 노정동